

## 우리나라 營養改善策

## —保健行政과 營養—

保健社會部 保健局長

金 鐸 一

## 緒 論

國民의 營養을 改善함은 國民의 健康을 增進시키는데 있어서 基礎가 되는 것이나 傳染病管理 食品衛生管理 家施計劃事業 등이 緊急한 問題로 되어 왔기 때문에 營養問題解決을 爲한 努力은 分散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國民의 體位가 向上되지 못하고 食糧消費 構造가 因襲의인 澱粉食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食生活을 改革하고 米穀을 節約하여야 한다는 價値判斷에서도 國民營養 改善事業의 一元化를 위한 對策을 講究할 時點에 이르렀다.

筆者는 이에 韓國의 營養問題에 對하여 保健行政을 重點의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 1. 保健行政

近代 保健行政은 1910年 8月29日 韓日合併 以後에 朝鮮總督府警察官署制가 實施됨에 따라 中央의 警務總監部 警察局과 各道 警察部에 衛生課를 두어서 警察에 依한 取締行政을 實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1945年 8月15日에 光復하자 美軍이 南韓에 駐屯하여 同年 10月27日에 保健厚生局으로, 또 翌年 2月19日에 保健厚生部로 昇格하여 15局 47課로 擴張되고, 同年 11月 7日에는 軍政法令 第25號로 各道 保健厚生局에 醫務課·藥務課·豫防醫學課·生活課 및 獸醫課 등이 設置되었다.

1947年 6月 南韓過渡政府樹立으로 保健厚生部는 6局(醫務·藥務·豫防醫學·厚生·調査分析·婦女)으

\*1969. 6. 10接受

로 縮少되었고, 1948年 8月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社會部の 保健局에 6課(醫務·保健·藥務·防疫·漢方·看護事業)로 縮少되었다가 翌年 3月 31日에 保健部가 獨立하여 3局(醫政·防疫·藥政) 11課로 擴大되었다.

그後 1955年 12月17日에 保健·社會兩部가 統合되어 保健社會部에 6局(醫務·防疫·藥政·援護·婦女勞動) 22課를 두었다.

## 2. 營養行政

國民의 營養管理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게 된 것은 5.16革命後인 1961年 10月 24日(法律 第734號)에 保健社會部가 醫政局(醫務課·地方醫政課·看護事業課), 保健局(防疫課·衛生課), 藥政局(藥務課·需給課·麻藥課), 社會局, 婦女局 및 勞動局의 6局으로 됨으로서, 醫政局의 地方醫政課에서 國民營養實態調査등을, 防疫局의 防疫課에서는 國民營養등을, 衛生課에서는 調理士 및 營養士의 管理등을 分掌하도록 職制를 改編함으로부터 始作되었다. 1963年 12月 16日 閣令第 1719號로서 醫政局 地方醫政課에서 國民의 營養管理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도록 다시 職制가 改編되었다.

食品衛生法이 法律第1007號로 公布(1962. 1. 20)되고, 同年 6月12日에 食品衛生法施行令(閣令第811號)이, 그리고 1963年 1月 8日에 同施行規則이 制定(閣令第100號)되므로서 同年 6月 12日에 調理士에 關한 規則 및 營養士에 關한 規則(保社部令第111號 및 第112號)을 그리고 同年 10月 5日에는 調理士講習에

관한 規則(保社部令第125號)을 制定하여 國民營養管理을 爲한 人的 資源을 確保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였다.

1962年 9月14일에 保健所法을 制定(法律第1160號)하여 各市·郡保健所에서 營養의 改善과 食品衛生에 관한 事項들을 管掌하게 하였으나 中央및 一線의 營養行政은 食品衛生 및 母子保健事業 등의 一部로서 隱蔽되어 왔다.

### 3. 營養調查·研究

營養學이 韓國에 獨立된 科學으로 紹介되기는 1945年 以後이며 그 前에는 醫大生化學教室, 女大家政科, 農大 및 藥大의 營養教育이 있었을 뿐이며 當時 衛生試驗所만이 食品·營養에 對한 基礎研究과 分析研究을 行하였으나, 食品·研究의 始初는 1920年에 生化學者들에 依한 數種의 調理食品의 分析으로 부터 비롯되었다 하겠다.

1945年 解放後 美軍政廳 厚生部에 保健厚生部國立化學研究所를 設置하였다. 1948年 7月 政府가 樹立됨에 따라 社會部所屬下에 두었으나 1949年 3月 政府組織法改正으로 保健部에 中央化學研究所로 改稱하여 두게 하였으며, 同年 11月에 同研究所 職制를 公布하여 營養科에서 飲食物에 對한 試驗·檢査·營養價測定, 食品衛生과 貯藏·加工에 對한 調查·研究·指導, 新陳代謝에 對한 研究, 國民營養에 對한 調查·研究·指導 및 依賴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게 하므로써 食品·營養에 對한 調查·研究을 強化하였다.

그러나 1963年 12月 16日 保健社會部傘下 4個研究機關 卽 國立保健院, 國立化學研究所, 生藥試驗所 防疫研究所가 國立保健院(統合各稱)으로 統合(閣令第1716號)됨으로 因하여 營養科의 機能이 縮少되었다.

### 4. 病院營養

國立醫療院에는 營養科를 設置(1958年6月)하여 入院患者의 食餌의 調理와 供給 및 厨房衛生의 管理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도록 하였다.

### 5. 營養教育

한편 保健要員의 技術訓練과 保健事業의 調查研究에 關한 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國立保健院 職制를 公布(1959年 12月) 하였는데 保健所要員·公醫·校醫·養護教師·保健管理者 등에게 訓練課程中에 教養課目으로서 營養教育을 實施하였고, 1959年 保健

大學院을 創設하여 保健行政學·環境衛生學·瘦學·保健統計學·母子保健學·生理衛生學·保健教育學 保健看護學分野의 保健學碩士를 輩出하였는데 主로 母子保健學과 保健看護學 課程에서 營養教育이 實施되었다.

以上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國民營養管理을 위한 職制가 補充되고 營養調查研究과 營養教育이 實施되고 있었으나 國民營養改善에 對한 確固한 對策이 缺如되고 있었다.

### 5. 推進現況

그리하여 政府는 1967年 3月 30日에 食品衛生法第34條의 2에 國民營養調查 및 指導에 關한 事項을 規定(法律第1921號)하여 沈滯되고 있는 國民營養改善事業을 長期的인 眼目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1968年度에는 同法에 따르는 國民營養改善令의 制定을 爲한 作業에 着手하였던바 同令이 早晚間 發効될 것이 期待된다. 1969年度에는 國民營養改善業務를 管掌할 수 있는 營養課(係)를 保健社會部에 設置하여 地方醫政課의 國民營養管理 業務와 食品衛生課의 營養士 및 調理士管理業務를 一元化한 計劃이다. 또한 全國에서 約 1,000家口를 任意多段 抽出法으로 選定하여 이들에 對한 第1次 國民營養調查(健康調查·食品攝取調查·食品經濟調查)를 實施하여 國民의 營養實態를 把握하므로써 앞으로의 國民營養改善의 方途를 講究하기 爲한 基礎資料를 마련하고자 한다.

### 6. 有關機關

國民營養改善 事業은 保健社會部가 主管하여야 될 事業이나 農林部·文教部 등의 政府機關과 韓國營養學會 등 民間團體의 積極的인 支援이 必要한 것으로 現在(1968. 10. 1)의 政府機構 및 法規上으로 營養管理와 關聯이 있는 機關을 列舉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 ① 保健社會部

醫政局 地方醫政課; 國民營養管理  
保健局 食品衛生課; 營養士 및 調理士管理  
母子保健課; 母子營養管理

#### 國立保健研究院

衛生部 食品分析科; 食品의 營養價分析研究  
訓練部 教授室; 國民營養의 實態調查 및 研究·  
國民營養의 向上을 爲한 指導

#### 國立醫療院

事務局 庶務課; 入院患者의 食餌의 調理와 供給

및 廚房衛生의 管理

保健所; 營養의 改善과 食品衛生에 關한 事項

勞動廳 勞政局 産業安全課; 産業保健(産業場給食)

② 經濟企劃院

經濟協力局 外資需給課; 糧穀需給計劃의 調整, 美公法 480의 資金 및 기타 農産物援助에 關한 對美交涉 및 執行計劃의 樹立·調整

調查統計局

經濟統計課; 食糧消費調查, 基本的인 經濟統計의 作成, 家計 및 物價調查分析

統計基準課; 各種統計調查의 基準作成, 標準分類 및 統計用語의 定義

③ 科學技術處

振興局 振興課; 科學技術振興에 關한 綜合的基本政策의 立案과 年次別計劃의 樹立 및 調整, 各種試驗·研究施設의 共同活用

調查課; 國內科學技術에 關한 調查·情報交換等

研究調整室; 科學技術開發을 爲한 調查研究課題의 選定 및 研究管理

原子力廳 食品工學 研究室, 食品貯藏 食品加工에 關한 研究

④ 農林部

(食糧消費構造改善委員會規程)…食糧消費構造改善方案의 樹立·分析·檢討·補給

農政局 調查統計課; 農産物生産費調查·農産物生産量調查·農家經濟調查

糧政局 糧政課; 食糧消費高調查·糧穀需給計劃 樹立

畜産局 畜政課; 畜産統計·畜産物의 需給調節 國立農産物檢査所 基礎研究科; 各種農林産物의 性狀調查 및 成分分析

農村振興廳…應用營養事業

指導局 生活改善課; 農村育兒指導·農村衣食改善指導

農工利用研究所 農産物科用科; 食品分析 및 營養에 關한 試驗

水産廳

漁政局 調查統計課; 水産基本統計調查·水産業生애스調查·水産物의 生活費調查

國立水産振興院 資源調查課; 水産物의 調查統計

淡水區試驗所; 漁村營養의 研究

中央水産檢査所 第2檢査課; 水産物에 對한

理化學檢査의 試驗研究

⑤ 商工部

國立工業研究所 食品工業科; 食品과 釀造에 關한 研究試驗分析·鑑定 및 技術指導

⑥ 文教部

社會體育局 體育課; 學校保健 및 體育(學校給食)

⑦ 國防部

(陸軍食料廠令)…陸軍에 所要되는 副食品의 調達·檢査 및 貯藏과 分配(陸軍給食制度研究委員會) 人事局 體育課; 軍人軍屬의 體育振興計劃과 體力向上

軍需局 補給課; 軍給食政策의 樹立

陸軍技術研究所…軍食糧에 對한 調查·研究

⑧ 法務部

(在所者 및 院生給食管理委員會規程) 在所者와 院生에게 給與할 副食의 食群과 數量의 決定·給食에 있어서의 基準營養量의 決定

矯政局 管理課; 矯導官 및 在所者의 給食管理

⑨ 文化公報部

公報局 國內課; 政府의 施策과 業績의 弘報·計劃 및 指針, 國民生活의 啓導

⑩ 民間團體

韓國營養學會, FAO 韓國協會, 食品·營養專門委員會, FAO 飢餓解放運動韓國委員會, 大韓醫學協會, 大韓藥學會, 大韓農化學會, 大韓家政學會 등

⑪ 國際機關

UNICEF, WHO, FAO, USAIDIK 등

⑫ 其他

保健大學院, 各大學校의 食品·營養研究, 11個營養士養成學校 등

7. 國民營養改善의 方向

위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韓國의 國民營養事業의 歷史는 極히 日淺하므로 國民의 營養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方途를 講究하여 國民의 體位와 體力를 向上시키고 國民의 營養不適狀態의 改善이 要請된다.

過去 20餘年間に 國立保健院 및 數個의 大學校에서 散發的으로 實施한 營養調查結果와 農林部·FAO 韓國協會에서 發行한 食品需給表(1962~1967)에 나타난 營養供給量을 綜合하여 檢討하면, 우리나라 成人 1人 1日當 攝收量을 熱量이 1800~2600 cal를, 蛋白質은 55~84g, 脂質은 11~18g, 糧質은 340~540g, 칼슘은 260~500mg, 철분은 14~42mg, 비타민 A는 1,100~5,200I.U., 비타민 B<sub>1</sub>은 1.3~2.0mg, 비타민 B<sub>2</sub>는 0.9~1.1mg, 나이아신은 23.0~28.0mg, 비타민 C는 61~84mg로서 그 實態를 正確히 把握할 수

는 없으나 우리 국민에게 當面한 營養問題는 熱量攝取의 增加와 아울러 蛋白質·脂質·칼슘·비타민 A 및 비타민 B<sub>2</sub>의 攝取增大로서 第1次的인 國民의 營養改善方向은 이러한 營養素를 供給할 수 있는 對策을 講究하는 作業인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國民營養改善의 方向은 國民의 營養實態를 正確히 把握하기 爲한 國民營養實態調查와 食糧消費構造改善을 爲한 強化食品 및 高營養食品(豆類·淡水魚類·乳類)의 增産·開發과 食形態의 改善, 國民營養所要量 및 基準量設定, 未就學兒童·妊産婦·授乳婦·病弱者 및 成人의 營養管理와 集團給食施設의 營養管理를 徹底히 하고 國民에게 營養改善思想을 普及시킬 수 있는 對策等 방대한 課業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일을 遂行하기 爲하여서는 1) 이를 全般의 으로 調整할 수 있는 諮門機關의 中央 및 地方의 設置 2) 國民營養改善法의 制定 3) 保健社會部에 營養課를, 市·道에는 營養係를 設置하여 行政力을 强

화하고 4) 營養指導員을 市·道에 配置하여 國民에게 營養改善思想을 普及시키며 5) 産業場에 營養指導員을 두어 生産性의 營養管理를 徹底히하여 勞動力을 保全하며 6) 學童에 對하여 營養給食을 提供하므로서 偏食을 矯正하고 第2世의 食生活를 改善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야 될 것이다. 한편 國民營養管理를 爲한 調査·研究機構를 強化하여 國民體位向上에 關한 調査·研究·食生活改善과 食習慣에 關한 調査·研究과 아울러 食品에 對한 成分分析을 實施하여 韓國食品의 營養素 含有量을 正確히 把握하고 새로운 高營養食品을 開發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大多數의 國民이 均衡食을 取하게 되므로서 米穀偏重의 食糧消費構造를 改革하고 營養障碍를 克服하여 都市와 地域社會와의 食生活의 隔差를 平準化하고 國民의 體位를 向上시키어 國家經濟開發 및 國防力을 強化할 수 있는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